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3707-8235~6 / 전송 3707-8249
 처리부서 : 주택재개발과 과장 배경동 담당사무관 정병일 담당 장춘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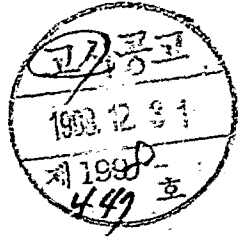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주재58531- 334A

시행일자 1998. 12. 31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	
보존		by 모 드	
주택재개발과장	전결	법무담당관심사필 재개발2담당사무관 정병일	협조
기안	장춘식		

제 목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(경미한 변경)

1. 강북구 주택58531-3305호('98.12.26)와 관련입니다.
2. 위 대호와 관련 건설부고시 제184호('75.11.13)로 구역지정(범위결정)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391호('93.12.7)로 사업계획결정·같은고시 제1997-386호('97.12.5)로 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되고, 같은고시 제1998-378호('98.11.5)로 구역변경지정결정된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구역변경지정결정 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한바, 측량결과 및 누락지번 추가 등에 따른 단순변적정정 등을 요청한 사항으로,
3. 도시재개발법 제4조(재개발구역의 지정)제1항·제3항,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하고,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하고자 합니다.

따로붙임 : 고시안 및 신청서류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장

(제2안)

수신 : 행정자치부장관

제목 : 관보게제 의뢰

아래와 같이 관보게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

다. 관련법규 : 도시재개발법 제4조, 같은법시행령 제12조.

따로붙임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3안)

수신 :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: 주택관리과장 김지배장관

제목 :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결정 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184호('75.11.13)로 구역지정(범위결정)된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-391호('93.12.7)로 사업계획결정·같은고시 제1997-386호('97.12.5)로 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되고, 같은고시 제1998-378호('98.11.5)로 구역변경지정결정된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

2.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·제3항,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미한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따로붙임 :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4안)

수신 : 강북구청장

참조 : 주택과장

제목 :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통보

1. 주택58531-3305호('98.12.26)와 관련입니다.

2. 위 호로 구역변경지정결정 요청한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구역변경지정결정 하였기 통보하니 관련내용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관계부서에 알리어 도시계획업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

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5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

제목 :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통보

우천시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변경지정결정 하였기 통보
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주택재개발과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 - 호

고시일자	1998.12.31	제	600	호
담당자	법제심사관	부	담당관	
김광영	이종범	박동영		

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

1. 건설부고시 제184호('75.11.13)로 구역지정된 후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391호('93.12.7)로 사업계획결정·같은고시 제1997-386호('97.12.5)로 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되고, 같은고시 제1998-378호('98.11.5)로 구역변경지정된 미아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·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(전화:3707-8235)와 강북구 주택과(901-6380)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 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미아제5주택재개발사업
- 나. 위 치 : 강북구 미아동 1266번지일대
- 다. 시행면적 : 당초 112,961㎡, 변경 112,970㎡(증, 9㎡)
- 라.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
 - (1)도로결정(변경)조서 : 생략(변경없음)
 - (2)공원결정(변경)조서 : 생략(변경없음)
- 마. 도시계획시설의 위치 및 규모
 - 학교시설결정(변경)조서 : 생략(변경없음)
- 바. 건축계획

159

김광영 조필